

6. 國有財產法施行令中改正令

대통령령 제15,487호 1997. 10. 1

주요 골자

- 가. 정부소유주식의 처분을 당해 주식발행 기업체 또는 정부출자기업체인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영 제33조제3항)
- 나.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시장재개발사업시행구역안의 국유지에 대하여 매각대금의 분할 납부를 허용하도록 함(영 제44조의 2 제1항제5호).
- 다. 재개발지역안의 국유지 점유자중 사업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자에 대하여 당해 국유지 매각대금의 분납이자율을 현행 8퍼센트에서 5퍼센트로 인하하도록 함(영 제44조의 2제3항 단서).

개정 이유

재개발지구내 국유지 점유자중 사업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자에 대하여 당해 국유지를 매각하는 경우의 매각대금 분납이자율을 인하함으로써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진행 및 민원해소를 도모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국유재산관리의 효율성과 국민의 편익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

국유재산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시·군·읍·면”을 “시·군·구·읍·면·동”으로 한다.

제26조제2항제2호중 “토지외의 재산의 경우”를 “토지외의 재산 또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대지사용권을 포함한다)의 경우”로 하고, 동조 제4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지방세법 제212조의 규정에 의한 소액부징수 등의 사유로 농지소득금액이 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농지소득금액을 산정할 수 없는 때에는 농지소득금액이 산정되어 있는 농지로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2개이상 농지의 해당작물별 단위면적당 농지소득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당해 토지의 단위면적당 농지소득금액으로 한다.

제26조의 2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4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를 하는 경우(제2차연도이후의 경우를 제외한다)
2.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작

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허가를 하는 경우

제27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동조제2항 전단중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 4회이내에서”를 “연 4회이내에서”로 하여 동항을 제3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사용·수익허가를 한날(경작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허가를 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9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수입금액이 확정된 날)부터 60일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에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리청은 그 납부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3조제2항 단서중 “한국산업은행법 제53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를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 효율적처리 및 성업공사의 설립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로 한다.

제33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제2항”을 “제2항 또는 제3항”으로 하여 동항을 제4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총괄청은 법 제3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처분을 당해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 또는 정부출자기업체인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34조제1항중 “부동산과 그 종물을 말한다”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로 하고, 동항에 각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
2.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위탁한 재산

제34조제3항 본문중 “제1항”을 “제1항제1호”로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제1항제2호의 경우에 당해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 또는 정부출자기업체인 금융기관에 귀속시킬 수 있는 매각대금의 범위는 매각과정에서 발생한 필요경비로 한다. 이 경우 총괄청은 수탁자와 협의하여 필요경비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 대행수수료를 추가로 귀속시킬 수 있다.

제35조제2호중 “시장(특별시 및 광역시 및 광역시의 경우에는 구청. 이하 같다)·군수가”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이”로 한다.

제36조제1호 본문중 “경쟁에 붙이기 곤란하거나”를 “경쟁에 붙이기 곤란하거나 2회에 걸쳐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으로 한다.

36조제9호중 “자본시장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증권거래법 제2조제18항”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단서중 “(특별시·광역시와 총괄청이 지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1천만원)”을 “[특별시·광역시(군을 제외한다)와 총괄청이 지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1천만원]”으로 한다.

제37조의 2중 “매각하는”을 “처분하는”으로, “매각가격”을 “처분가격”으로 한다.

제38조제1항제2호 본문 중 “장외거래등록주식”을 각각 “협회등록주식”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중개실등”을 “협회중개시장 또는”으로 하며, 동조제4항 및 제5항 단서중 “자본시장육성에 관한법률 제12조”를 각각 “증권거래법 제205조의 2로 한다.

제38조의 2 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3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에 매각대금 감액을 결정에 관한 사항

제4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41 조(준용규정) ① 제24조의 규정은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계약의 체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② 제37조의 규정은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매수가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 제4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료를 납부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42조를 삭제한다.

제44조의 2제1항제4호중 “매각하는 경우”를 “매각하는 경우(당해 토지가 공공시설 보존지역에 있어 재개발구역안의 다른 국유지를 매각하게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재개발사업 시행구역안의 토지중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6.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전용단지·기술연구집단지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토지를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기술연구집단지 지정의 지정을 받은 자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제44조의 2 제2항제1호중 “특별시·광역시 및 시외의 지역”을 “군지역 및 도농복

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매각하는 경우”를 “매각하는 경우(당해 토지가 공공시설 보존지역에 있어 재개발구역안의 다른 국유지를 매각하게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며, 동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분할납부의 경우에는 연 5퍼센트의 이자로 한다.

제44조의 3 제2항 중 “제44조의 2 제1항제4호”를 “제44조의 2 제1항제4호 내지 제6호”로 한다.

제50조제2항중 “시장·군수”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56조제3항을 삭제하고, 동조제4항중 “제4항”을 “제4항 및 제44조제3항·제4항”으로 한다.

제57조제4항 본문중 “시장·군수에게”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 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 효율적처리 및 성업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사용료 산정방법의 변경 등에 따

른 적용례) ① 제26조의제2항제2호 및 제26조의 2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사용·수익허가(허가를 갱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② 제26조제4항 및 제26조의 2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부과고지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 3 조(수익계약 해당사유에 따른 적용례) 제36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당시에 입찰절차가 이미 진행중인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제 4 조(연체료규정의 준용에 따른 적용례) 제41조제3항 및 제5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부과고지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 5 조(시장재개발사업에 따른 국유지 매각대금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 2 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 6 조(국유지 매각대금의 분납이자율의 인하에 따른 적용례) 제44조의 2 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분납금부터 적용한다.

제 7 조(국유지 매각대금 분할납부 대상의 변경에 따른 특례) 이 영 시행전에 제44조의 2 제1항제4호 및 동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이미 일시납부의 방식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이 영 시행일까지 납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미 체결한 일시납부의 매매계약을 분할납부의 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의 납기는 종전의 매매계약과 동일한 것으로 한다.

주택회보